

2019년 4월 20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4. 22.(월) 10: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4. 22.(월) 10:00 ~ 2019. 4. 24.(수) 17:00  
방법 :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9.(목) 11: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문 3】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포함되나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 5】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 6】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급부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 ③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과실에 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불확정기한이다.
-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문 8】 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종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비법인사단인 종종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종종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④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런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 9】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문10】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중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④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功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11】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반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반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2】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면책적 인수로 본다.
-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③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문1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③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14】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15】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乙의 지시에 따라 乙과 계약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이후 乙과의 계약관계가 무효이거나 해제되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문16】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인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목은 제3자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어서 위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문17】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 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 ②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④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시처분인 가압류의 특성상 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19】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문20】 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③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 ④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되 그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한 때이다.

【문21】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사람은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뿐이다.
- ②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방법이다.
- ③ 증인신문과 달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당사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면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문22】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③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문23】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있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가 그 업무 등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

【문24】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 소송구조 기각결정 후 그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면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장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은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에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추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 ④ 소송비용의 납입결정, 추심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25】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②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취하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 ③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 ④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였다면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2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나. 보조참가에 대한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 참가인은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불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를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수행상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라면 피참가인이 가진 상계권, 취소권, 해지·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소송고지의 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마.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가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마      ④ 나, 다, 마

【문27】 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룰 수 있으나, 경합된 압류명령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③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 ④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문28】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것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 ③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도 그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소의 제기, 재심의 소제기 등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29】 항고와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을 다시 취소한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채권압류 및 전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항고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면 되므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 ④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30】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참가만 가능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참가만 할 수 있다.
- ②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기록에 가철하지만, 피참가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하게 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③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인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문31】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 ②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 관할이다.
- ③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그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
- ④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데, 다만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2】 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②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들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 ③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을 매수하고 아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그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아무런 권원 없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인 乙은 甲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문33】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②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담하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문34】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제기 후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②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 ③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참가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35】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신청 직후에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그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문36】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의시하고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분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고,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37】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고 제1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② 단순병합에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 ③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이 아니라 일부판결이다.
- ④ 예비적 병합에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문3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 ②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주된 항소의 상대방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주된 항소의 상대방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항소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

【문39】 피고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며,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는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 ④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문40】 다음 중 판례상 판결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 ②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 ③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m<sup>2</sup>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
-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

【문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2】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②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인된다.

【문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나, 동시이행행변권에 기한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협박죄에 있어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범의의 종류나 범의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범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포함될 뿐 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서 회갈 2개를 들고 나와 자해할 의사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문 5】 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달리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의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6】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7】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④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된 경우에도 위증이 된다.

【문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준범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다면 그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된다.
-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문 9】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10】 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아직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다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무사 요원인 피해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 신분증 사본, 수첩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④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과 손목시계와 여관방실들의 열쇠를 강취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이 강취한 열쇠로 여관방 문들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문1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 ③ 따라서 위 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의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건 이미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건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법원에 가 있건 언제나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소자에 관하여는 상소의 경우와 같이 제출방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 ②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구금의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금의 사유와 구금의 필요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의 그것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구속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고,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그 청구와 함께 제출된 상소장에 대하여는 상소기각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
- ④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문13】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증거동의를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부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③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사법원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문14】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감청’이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15】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이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따로 제3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재정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7】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 ② 형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산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 ③ 재판장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법원사무관등은 형사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열람·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문18】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 나.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 라.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 마.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되,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된 경우, 가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해당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의 소환이라 할 수 없다.
- ③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에게는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다.

【문 1】 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어음이나 수표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의 방법으로 집행하나,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서가 금지된 것은 집행 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필요없다.
- ②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본래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보전처분은 그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여지가 없으며, 발령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실무상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한다.

【문 2】 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인 간접강제는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 ②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③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으로서의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 ④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3】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②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 ④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 금전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 ③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인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경합이 생긴다.
- ④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문 5】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기록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매각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고 그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6】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문 7】 보전의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명령이의절차에서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보전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선행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문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게시판공고와는 별도로 신문에 게재하되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는 입찰기간 게시일)의 2주 전까지 게재하여야 하며, 입찰 실시 후에 그 기간을 어긴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②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최근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추완이 허용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④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일괄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하고, 일괄지정 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9】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②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 ④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의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목적인 특정 부분이 경매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등기기록상의 지목이 농지인 때에는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정확히 기재하고 현장사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상의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 ④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없다하더라도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거나 경매절차 진행 중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재평가사유에 해당한다.

【문11】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인도집행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별도의 소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는 없다.
- ④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하여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의 결정은 그 경정결과와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13】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사안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사안에서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다.
- ④ 사안에서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②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대신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 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도 매각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②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고지·최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최선순위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후와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계산서상 금액이 집행기록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문16】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 ④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17】 보전처분절차에서 승계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가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위 승계에는 일반승계 이외에 특정승계도 포함된다.
- ② 보전집행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보전명령에 따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문18】 주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주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주심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 ③ 주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 ④ 주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된다.

【문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③ 임의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20】 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집행법원이 개인과산에서의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 계속 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항고법원은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문 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 20]까지 같음)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 ②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 2】 경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변동사항이 생겼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③ 주택임차권은 그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이 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한 말소대상 등기가 아니다.

【문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분할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④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4】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포괄승계가 있고 해당 법률에 등기기록상 종전 법인의 명의를 승계 법인의 명의로 본다라는 뜻의 간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법인이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인도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문 5】 신탁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丙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으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③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6】 토지 분필·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따른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 ② 합필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한 후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에서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甲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피수용자인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재결서등본 및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원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문 8】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② 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문 9】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며,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권한의 증명 등을 위해 그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甲이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대표이사 乙이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중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문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문12】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이는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13】 다음은 혼합공탁에 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있고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A ).
- 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있고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거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철회 등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B ).
- ㄷ.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혼합공탁을 할 수 ( C ).
- ㄹ.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먼저 있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D ).

	A	B	C	D
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③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④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문14】 수용보상금 공탁에 따른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까지는 그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ㄷ.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여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문15】 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ㄷ.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한다.

ㄹ.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문16】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발령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은 공탁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 ②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미성년자와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하여도 공탁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인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8】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8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각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탁신청과 관련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19】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공탁수탁서를 공탁관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피압류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④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방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문20】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이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분이 포함된다.
- ③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2019년 4월 20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4. 22.(월) 10: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4. 22.(월) 10:00 ~ 2019. 4. 24.(수) 17:00  
방법 :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9.(목) 11: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 2】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 3】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급부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 ③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 5】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문 6】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포함되나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 7】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익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④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 8】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9】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과실에 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불확정기한이다.
-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문10】 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종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비법인사단인 종종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종종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 ③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④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런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11】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문12】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乙의 지시에 따라 乙과 계약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이후 乙과의 계약관계가 무효이라거나 해제되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문13】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인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목은 제3자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어서 위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문14】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면책적 인수로 본다.
-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③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문15】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③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16】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17】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 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 ②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④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시처분인 가압류의 특성상 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19】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문20】 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③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 ④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되 그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한 때이다.

【문21】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사람은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뿐이다.
- ②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방법이다.
- ③ 증인신문과 달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당사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면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문22】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②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취하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 ③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 ④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였다면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23】 보조참가자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나. 보조참가에 대한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 참가인은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불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를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수행상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라면 피참가인이 가진 상계권, 취소권, 해지·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될 때에 비로소 생기고,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소송고지의 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마.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가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마      ④ 나, 다, 마

【문24】 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룰 수 있으나, 경합된 압류명령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③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 ④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문25】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③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건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문26】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있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가 그 업무 등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

【문27】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 소송구조 기각결정 후 그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면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장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은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에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추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 ④ 소송비용의 납입결정, 추심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28】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제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 ②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 관할이다.
- ③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그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
- ④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데, 다만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9】 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범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②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들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 ③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을 매수하고 아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아무런 권원 없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인 乙은 甲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문30】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②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담하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문31】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것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 ③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도 그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소의 제기, 제심의 소제기 등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32】 항고와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을 다시 취소한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채권압류 및 전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항고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면 되므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 ④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33】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참가만 가능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참가만 할 수 있다.
- ②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건으로 진산입력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기록에 가철하지만, 피참가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하게 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③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인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문3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고 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② 단순병합에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 ③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이 아니라 일부판결이다.
- ④ 예비적 병합에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문35】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 ②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주된 항소의 상대방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주된 항소의 상대방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항소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

【문36】 피고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며,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는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 ④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문37】 다음 중 판례상 판결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 ②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 ③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m<sup>2</sup>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
-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

【문38】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제기 후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②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 ③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참가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39】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신청 직후에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그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문40】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키고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분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고,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협박죄에 있어 고지되는 해약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약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포함될 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약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에서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약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서 회칼 2개를 들고 나와 자해할 의사로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문 3】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4】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②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인된다.

【문 5】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④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이 된다.

【문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다면 그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된다.
-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문 7】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 8】 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달리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의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9】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10】 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아직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다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무사 요원인 피해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 신분증 사본, 수첩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④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과 손목시계와 여관방실들의 열쇠를 강취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이 강취한 열쇠로 여관방 문들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문1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 ③ 따라서 위 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의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건 이미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건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법원에 가 있건 언제나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소자에 관하여는 상소의 경우와 같이 제출방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 ②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구금의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금의 사유와 구금의 필요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의 그것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구속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고,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그 청구와 함께 제출된 상소장에 대하여는 상소기각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
- ④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문13】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증거동의를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부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③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사법원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재정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5】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 ② 형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산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 ③ 재판장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법원사무관등은 형사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열람·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문16】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감청'이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17】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이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따로 제3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된 경우, 가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해당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의 소환이라 할 수 없다.
- ③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에게는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다.

【문19】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상소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상소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라.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마.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되,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한다.

【문 1】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②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 ④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구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 ③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인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경합이 생긴다.
- ④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문 3】 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음이나 수표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의 방법으로 집행하나,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서가 금지된 것은 집행 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필요없다.
- ②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본래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보전처분은 그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여지가 없으며, 발령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실무상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한다.

【문 4】 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인 간접강제는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 ②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③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으로서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 ④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5】 보전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명령이의절차에서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보전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선행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문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게시판공고와는 별도로 신문에 게재하되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는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게재하여야 하며, 입찰실시 후에 그 기간을 어긴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②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최근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추완이 허용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매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그 하자 는 치유된다.
- ④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일괄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하고, 일괄지정 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7】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기록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매각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고 그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8】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문 9】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하여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의 결정은 그 경정결과와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10】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사안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사안에서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다.
- ④ 사안에서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1】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②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 ④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의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목적인 특정 부분이 경매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등기기록상의 지목이 농지인 때에는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정확히 기재하고 현장사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상의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 ④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없다더라도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거나 경매절차 진행 중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재평가사유에 해당한다.

【문1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인도집행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별도의 소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는 없다.
- ④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4】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 ④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15】 보전처분절차에서 승계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가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위 승계에는 일반승계 이외에 특정승계도 포함된다.
- ② 보전집행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보전명령에 따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문16】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 ③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 ④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된다.

【문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②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대신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도 매각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②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고지·최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최선순위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후와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계산서상 금액이 집행기록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문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③ 임의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20】 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집행법원이 개인과산에서의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 계속 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항고법원은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문 1】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포괄승계가 있고 해당 법률에 등기기록상 종전 법인의 명의를 승계 법인의 명의로 본다든 뜻의 간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법인이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인도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문 2】 신탁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丙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으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③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 ②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 4】 경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변동사항이 생겼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③ 주택임차권은 그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이 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한 말소대상 등기가 아니다.

【문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분할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④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6】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② 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문 7】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며,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권한의 증명 등을 위해 그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甲이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대표이사 乙이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문 8】 토지 분필·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따른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 ② 합필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장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한 후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에서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甲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피수용자인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재결서등본 및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원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문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문12】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이는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13】 다음은 혼합공탁에 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있고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A ).
- 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있고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거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철회 등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B ).
- ㄷ.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혼합공탁을 할 수 ( C ).
- ㄹ.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먼저 있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 D ).

	A	B	C	D
①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②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③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④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문14】 수용보상금 공탁에 따른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까지는 그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ㄷ.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여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문15】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8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각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탁신청과 관련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1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공탁수탁서를 공탁관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피압류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④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방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문17】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이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분이 포함된다.
- ③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문18】 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p>&lt; 보      기 &gt;</p> <p>ㄱ.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p> <p>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p> <p>ㄷ.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한다.</p> <p>ㄹ.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p>
---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문19】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발령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20】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은 공탁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 ②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미성년자와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하여도 공탁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인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9년 4월 20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9. 4. 20.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아파트 101동 1101호를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로 丙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乙의 피용자인 중개보조원 丁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 1. 丁은 丙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丁은 이를 甲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돈 1억 원을 자신과 공모한 내연관계의 A에게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乙은 丁의 중개보조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과 丁을 상대로, 乙에게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한, 丁에게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각 물음에 대한 설명은 10줄 내외로 함)

-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청구취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귀하가 참여관으로서 소장심사를 하며 보정권고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하겠는지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한편 丁은 이 사건 전에 甲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천만 원이었다.
- 가. 丁은 답변서에서, 甲에 대한 위 임금채권 4천만 원과 甲의 丁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다. 丁의 甲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고, 甲이 가능한 재항변을 다하였다면 丁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겠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민사법 5-2**

나. 만약 丁이 甲과의 사이에 위 임금채권 4천만 원과 甲의 丁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10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한편 甲과 乙의 사이에서는 甲의 과실비율이 30%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丁은 1억 원, 乙은 위 1억 원 중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가.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만약 丁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라면,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1999. 1.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19. 1. 1. 경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각 물음에 대한 설명은 10줄 내외로 함)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9. 4. 1.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청구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다. 귀하가 참여관이라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검토해야 할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9.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의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던 乙은 2019. 3. 1.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X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이 대출받은 1억 원을 A은행에 변제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에게 위 변제를 이유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 민사법 5-3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9. 4. 1.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분은 2019. 4.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乙은 위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4.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9. 1. 1.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자,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자, 乙은 甲과 丁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승낙한 바 없다며 丁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019. 4. 20.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1억 원의 지급청구(이하 ‘①청구’라고 한다), 대여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이하 ‘②청구’라고 한다), 투자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이하 ‘③청구’라고 한다)를 병합하여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乙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에서 다투었는데, 제1심 법원은 ①청구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인용하는 일부 인용판결, ②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판결, ③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위 판결선고 후, 甲은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였다가 2019. 3. 15. 항소를 취하하였다. 甲은 2019. 4. 4.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2019. 4. 8.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하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 약속하고, 甲이 다시 제기한 2019. 4. 8.자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약속하시오. [1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위 판결 중 ③청구에 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乙은 위 판결의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①청구와 ②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에 관하여 약속하시오. [1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위 판결 중 패소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甲이 항소심에서,
  - 가. ③청구에 대하여만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하여 약속하시오. [10점]
  - 나. ③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항소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하여 약속하시오. [10점]

## 민사법 5-5

### 【문 2】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조건 위반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X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기하여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도 乙이 X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甲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X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X건물에는 乙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후 乙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丙이 X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집행에 실패하였다. 甲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丙이 乙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丙을 乙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甲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 【문 3】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甲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乙에게 항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乙은 위 문건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2019년 4월 20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9. 4. 20.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문 1】** 다음 각 사안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특별법 위반은 제외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甲은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乙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맡겼는데, 재고 등에 손실이 발생하자 乙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乙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니던 중 乙이 납품업자들로 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甲은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 A를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A는 그 후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乙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없었다. 사실 점장 乙은 입점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甲이 명예훼손죄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A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무장 甲은 회사 부사장인 乙 등의 관리자가 노조의 게시물을 철거하려고 시도하여 대치하던 중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甲보다 15세 연장자로서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A 주식회사는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전에도 甲과 乙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 교섭이 결렬되기도 하였다. 甲이 모욕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은 운영하던 콜라텍을 A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하였다. A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A가 甲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 및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乙에서 재차 丙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A가 甲과 乙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甲과 乙은 丙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경찰관과 검찰주사에게 甲과 乙의 부탁대로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후 A가 丙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丙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甲, 乙, 丙에게 범인도피교사 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형사법 4-2

**【문 2】** 다음 각 사안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은 30대 초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 A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다. 甲과 A가 함께 근무하는 B 주식회사의 서울지사 직원은 전부 합하여 10여 명 정도이고, A는 유일한 여직원이다. 甲은 평소 A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였는데, A는 甲이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이에 응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 甲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A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곧바로 자신의 양손으로 A의 어깨를 서너 번 주무르다가 A의 반발로 이를 중단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 甲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甲이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을 때에는 온 몸에 소름이 돋고, 혐오감마저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甲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2. 다음 각 사례에서 각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특별법 위반은 제외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 가. 부동산 매도인 甲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0점]**
  - 나. 乙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포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사기피해자 B가 丙에게 속아 위 乙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乙은 그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乙이 丙의 사기범행의 공범인 경우와 공범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乙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10점]**

**【문 3】** 다음 각 사안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특별법위반죄는 논외로 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甲은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2018. 4.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2018. 4. 15. 갑자기 사망하자, 2018. 5. 1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라. **[10점]**
2. 甲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들어가 인터넷상에 게시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乙의 허락 없이 乙의 인적사항 및 그 계좌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신청서 용지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乙’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甲은 이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丙에게 전송하였고, 丙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았다. 甲의 죄책을 논하라. **[10점]**

2019. 4. 20.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형사소송법

## 【문 1】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018. 7. 4. 피고인에게, 2018. 7. 6.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이 2018. 7. 19.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8. 8. 9. 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8. 7. 21.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 【문 2】

甲과 乙은 A의 가게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丙은 위 휴대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丙은 장물취득죄로 각 기소되었다. 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甲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乙과 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乙과 丙을 나누어 기재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 【문 3】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모두 약술하시오. [30점]

## 형사법 4-4

**【문 4】** 다음 각 사안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약 10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 甲을 상습도박죄로 약식기소 하였는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공소사실에서 총 12회의 도박사실 중 4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甲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15점]**
2. 판사 A는 피고인 乙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인 乙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乙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판사 A가 담당하게 되었고, 판사 A는 피고인 乙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후 피고인 乙에게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판사 A의 위 재판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약술하시오. **[15점]**